



Blockchain

CRYPTO

2026년 05월 04일 |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| 투자전략팀

Digital Asset Monthly
비트코인 중심의
디지털자산 시장

디지털자산/원자재심수빈



Contents

Digital Asset Dashboard

p. 03

I.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

p. 04

II. 월간 주요 이슈 점검

p. 12

- 4월 비트코인 상승 요인 점검
- 일본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

Compliance Not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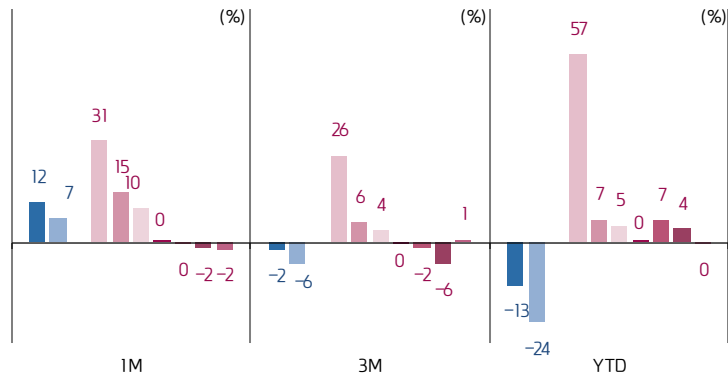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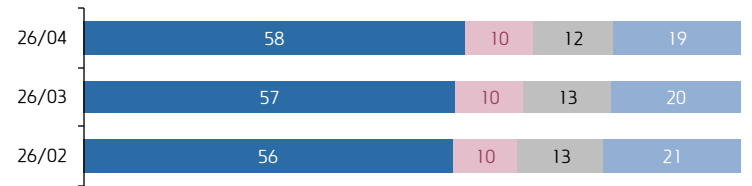
비트코인과 주요 자산의 기가별 수익률 비교

■ 비트코인 ■ 이더리움 ■ KOSPI ■ 나스닥 ■ S&P500 ■ 미 국채 지수 ■ 금 ■ 은 ■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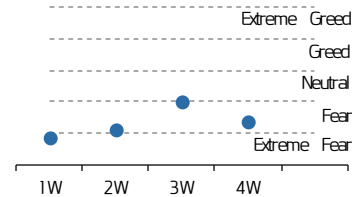


비트코인, 이더리움 도미넌스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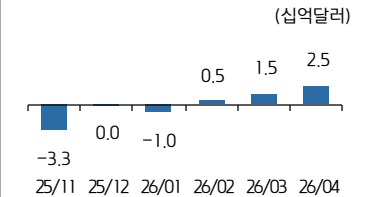
■ 비트코인 ■ 이더리움 ■ 스테이블코인 ■ 기타 (%)



Crypto Fear & Gree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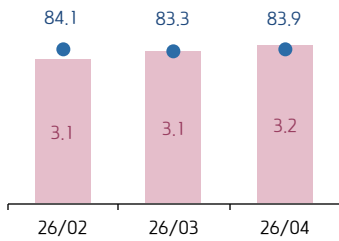


Crypto Funds' Flow



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

■ 스테이블코인 시총(조달러)
● USDT, USDC 도미넌스(%)



RWA(Real World Asset)

	Total Value (\$bln)	30D (%)	Market Share (%)
미 국채	14.9	11.7	48.7
원자재	5.2	-2.7	17.0
크레딧	5.5	-9.7	17.9
기타	5.0	33.7	16.4
RWA Total	30.7	7.3	100.0

Monthly Issue

• 4월 비트코인 상승 요인 점검

- 4월 비트코인은 비우호적인 매크로 여건 속에서도 반등. 스트래티지 등 DAT 기업의 매수 지속과 ETF 자금 순유입 전환으로 연초 투매 우려가 해소된 영향
- 모건스탠리 등 월가 주요 금융사들의 비트코인 자산 편입 기조도 지속. 4월 모건스탠리는 자체 비트코인 현물 ETF(MSBT)를 출시하며 고객 포트폴리오 내 2~4% 배분을 공식 권고

• 일본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

- 일본은 2026년 4월 금융상품거래법(FIEA)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재분류. 향후일본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 가능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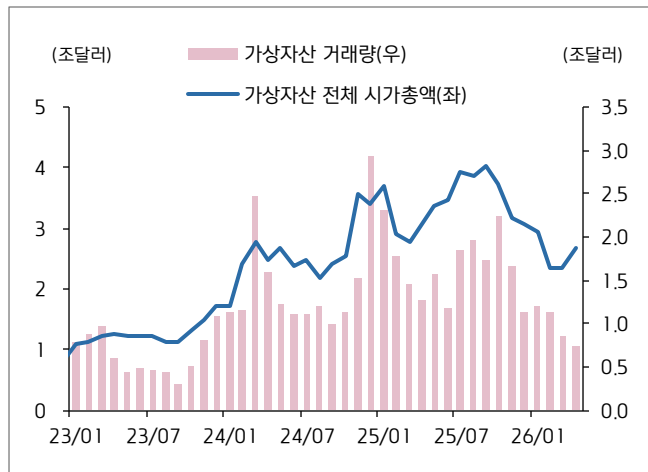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The Block, RWX.xyz, Coinmarketcap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/ 주: 4월 30일 기준

I.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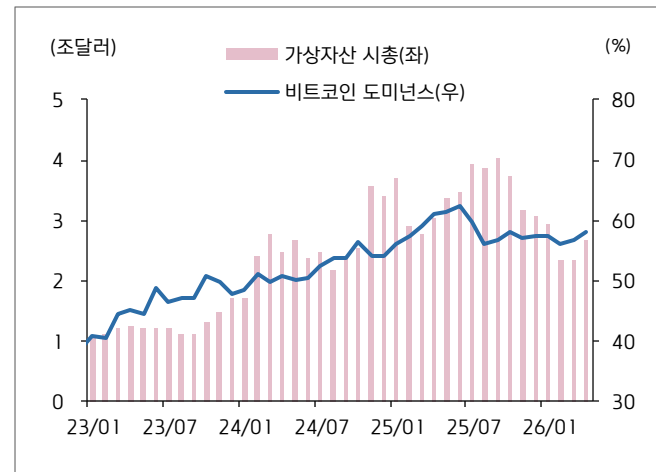
- ▶ 4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2.6조 달러로 전월 대비 상승하며 회복세를 나타냄
 -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상승한 점을 감안, 4월 가상자산 시총 증가는 비트코인 중심의 상승에서 기인
- ▶ 동기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월간 거래량은 약 0.7조 달러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1조 달러를 하회

가상자산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거래소 월간 거래량



자료: Coingecko, The Block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 주: 가상자산 거래량은 4월 1일~4월 29일까지 누적

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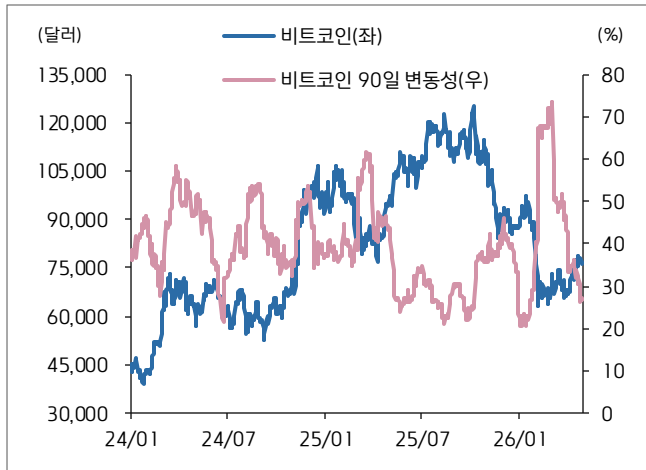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Coingecko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02.

Digital Asset Market Review: 비트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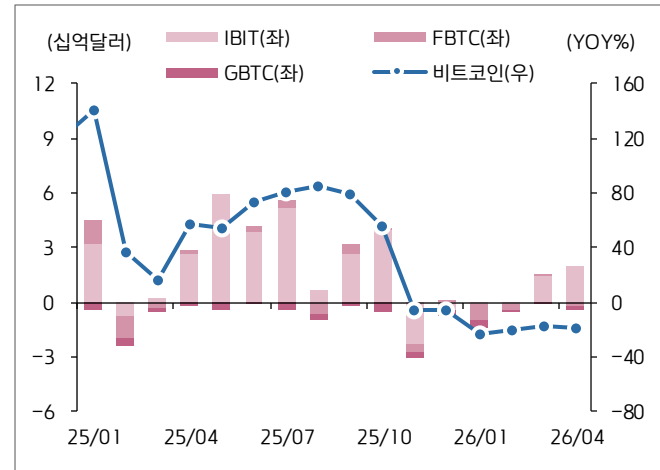
- ▶ 비트코인은 4월 30일 기준 76,466.34달러 기록, 4월 말 대비 12.1% 상승
 - 월 초 미-이란 휴전 합의로 유가의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도 개선된 영향
 - 또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한 점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. 스트래티지에 따르면, 4월 13일~19일 간 34,164BTC를 매수했으며, 이는 2024년 11월 이후 최대
- ▶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자금 유입 지속. 4월 주요 비트코인 ETF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약 22.4 달러로, 3월보다 확대
 - 4월 초 모건스탠리가 자체 비트코인 현물 ETF(MSBT)를 출시

최근 3년간 비트코인 가격과 90일 변동성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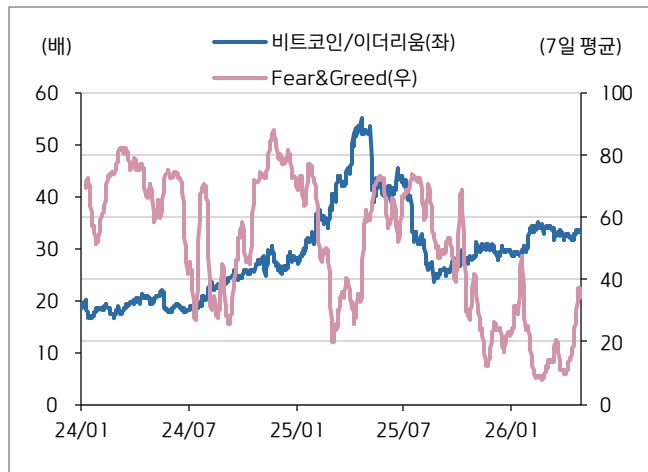
미국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입과 비트코인 가격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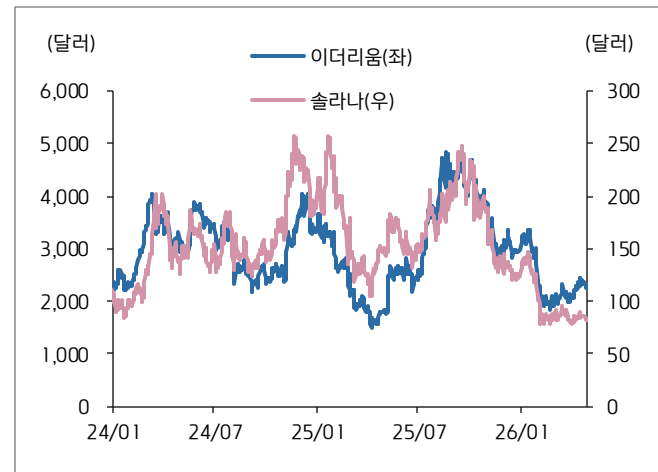
- ▶ 비트코인 상승으로 4월 중 가상자산시장 투자심리는 '극단적 공포'에서 '공포'로 개선
- ▶ 투자심리 개선 속 알트코인 가격도 반등세를 보였으나 비트코인 대비 상승폭 제한
 - 이더리움: 4월 30일 기준 2,263.645달러 기록, 4월 말 대비 7.5% 상승
 -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 비율 33.8배로 전월 대비 상승,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ETF에 집중된 영향으로 판단

비트코인/이더리움과 가상자산 투자심리 지수



자료: Bloomberg, Coinmarketcap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이더리움 및 솔라나 가격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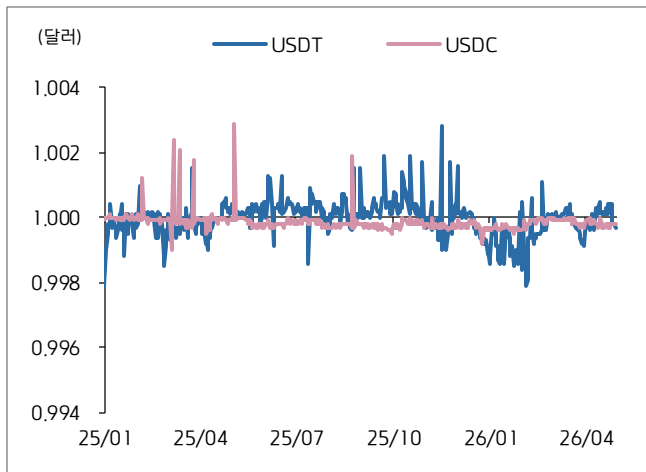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04.

주요 스테이블코인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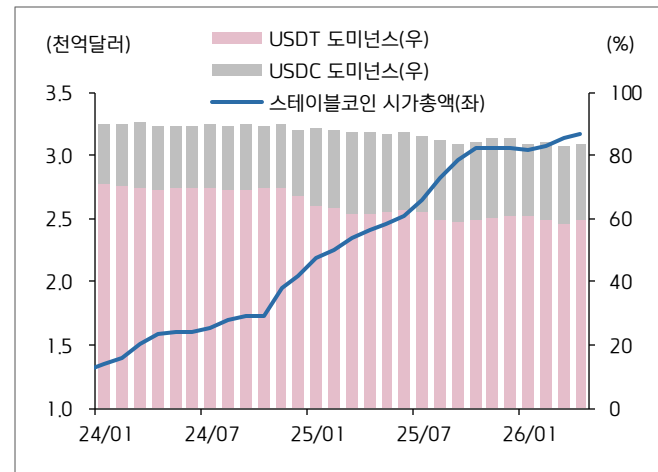
- ▶ 4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 축소에도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3,179.2억 달러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
 - USDT와 USDC의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은 3월 83.4%에서 4월 말 83.9%로 소폭 증가
- ▶ 이런 가운데 USDT 시가총액은 4월 중 1,900억 달러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
 - 4월 Drift 프로토콜* 해킹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테더는 Drift 복구 펀드에 참여
 - 테더는 참여 조건으로 Drift를 USDC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에서 USDT 기반의 탈중앙화거래소로 전환을 유도
 - *Drift 프로토콜: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(DEX)

USDT, USDC 가격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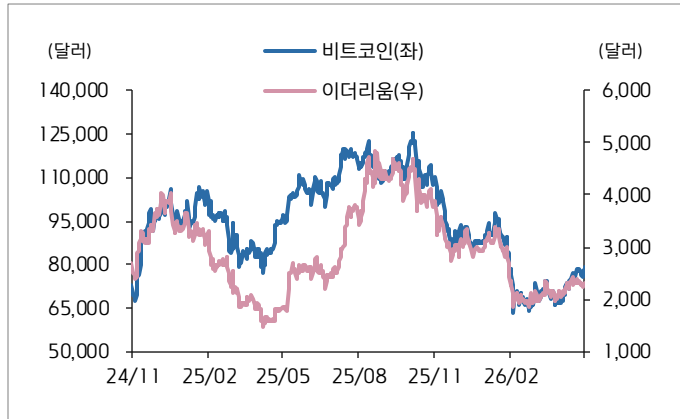
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과 USDT, USDC 점유율 변화



자료: Bloomberg, DefiLlama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05. 최근 비트코인과 주요 자산 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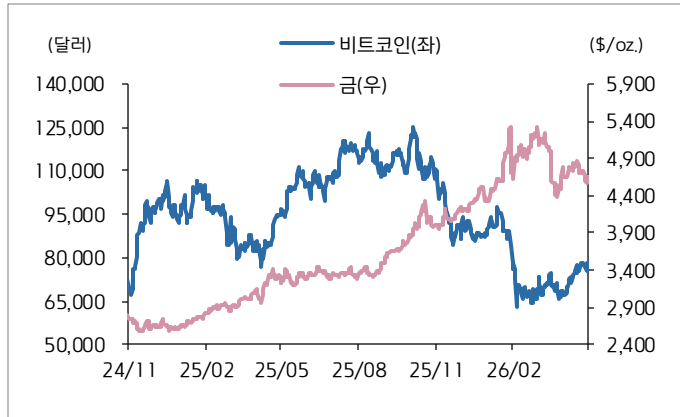
비트코인 vs 이더리움



비트코인 vs 달러



비트코인 vs 금



비트코인 vs 나스닥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06.

주요 가상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

주요 가상자산 가격 변화(4월 30일 기준)

가상자산 (티커)	가격(\$)	수익률(%)					Market cap (\$bln)	30일 변동성(%)	
		1M	3M	YTD	1Y	2Y		'26년 04월	'25년 04월
비트코인 (BTC)	76,466.3	12.1	-2.2	-12.8	-19.2	27.7	1,519.7	27.04	43.28
이더리움 (ETH)	2,263.6	7.5	-6.4	-24.0	26.1	-23.6	275.0	38.84	75.62
리플 (XRP)	1.4	1.9	-15.4	-25.5	-37.7	174.4	84.3	28.45	61.09
바이낸스코인 (BNB)	615.4	-0.3	-21.1	-28.8	2.6	8.1	82.9	29.58	31.18
솔라나 (SOL)	83.1	-0.1	-21.2	-33.3	-43.7	-34.4	47.8	43.62	80.28
트론 (TRX)	0.3	4.3	14.0	15.0	32.2	175.3	31.0	11.41	29.74
도지코인 (DOGE)	0.1	15.5	2.3	-9.1	-38.2	-20.1	16.4	36.22	76.53
에이다 (ADA)	0.2	2.1	-15.9	-25.9	-63.8	-44.0	9.1	47.08	73.24
비트코인캐시 (BCH)	440.9	-5.4	-13.0	-26.3	20.5	1.6	8.8	27.76	75.18
체인링크 (LINK)	9.1	3.7	-8.8	-25.3	-36.3	-30.7	6.6	43.32	81.38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07. 주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주가 동향

블록체인/가상자산 컨셉의 미국 상장주식 가격 동향 (4월 30일 기준)

유형	기업 (티커)	가격(\$)	단기 수익률(%)			중장기 수익률(%)			Market cap (\$bln)
			1M	3M	YTD	1Y	2Y	3Y	
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 (Digital Asset Treasury)	스트래티지 (MSTR)	165.5	32.6	10.5	8.9	-56.5	55.3	403.8	61.4
	비트마인 (BMNR)	21.4	8.2	-14.7	-21.2	214.7	94.5	12.6	12.5
채굴(Mining)	마라톤디지털 (MARA)	12.0	46.9	26.2	33.5	-10.3	-25.3	19.1	4.4
	클린스파크 (CLSK)	12.5	47.2	5.8	23.8	53.4	-23.5	220.5	3.1
	비트디어 (BTDR)	11.3	30.5	-13.4	0.7	18.0	105.6	50.5	2.9
인프라솔루션	써클인터넷 (CRCL)	90.9	-4.7	42.2	14.6	-	-	-	24.6
가상자산(Crypto) 거래소	코인베이스 (COIN)	187.8	7.5	-3.6	-17.0	-7.5	-7.9	249.1	50.5
	벡트 (BKKT)	8.6	17.1	-35.6	-14.1	-8.1	28.5	-74.5	0.3
결제	페이팔 (PYPL)	50.1	10.9	-4.8	-14.1	-23.8	-26.2	-34.0	45.4
	블록 (SQ)	70.5	17.2	16.7	8.3	20.6	-3.4	16.0	42.8
자산관리	갤럭시디지털 (GLXY)	27.4	48.7	-2.9	22.7	71.6	212.2	641.6	11.0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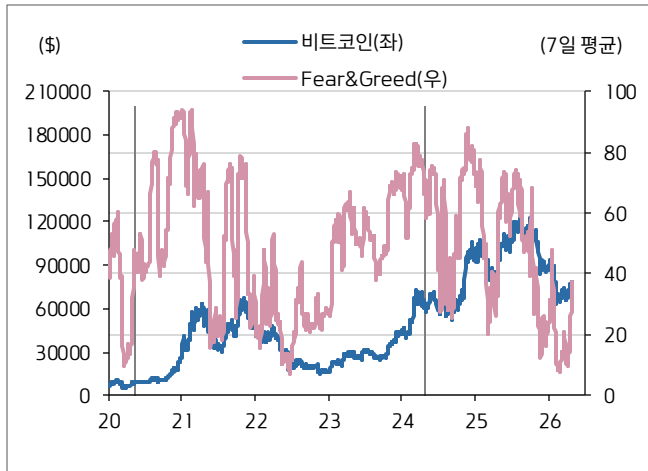
II. 월간 주요 이슈 점검

01.

비트코인 가격 반등 속 가상자산 투자 심리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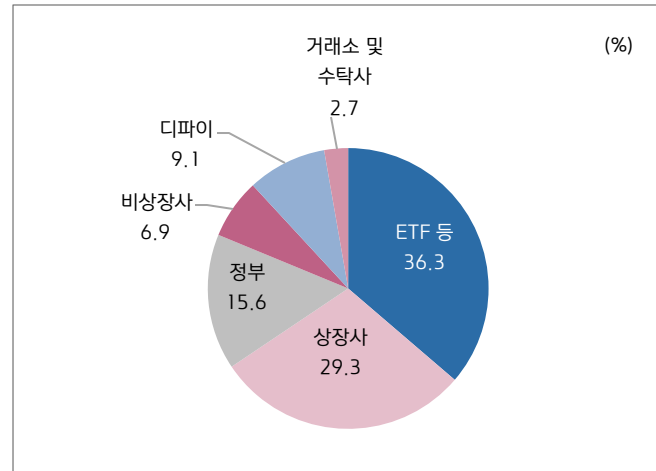
- ▶ 4월 비트코인은 고유가 흐름과 이에 따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비우호적인 매크로 여건 하에서 상승
- ▶ 이는 미-이란 휴전 속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 회복된 가운데 비트코인 대규모 매도 우려가 완화되었기 때문
 - 연초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스트래티지(MSTR), 주요 자산운용사 등 주요 보유 주체들의 매수단가를 하회
 - 이에 대규모 손절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. Glassnode에 따르면 Blackrock 등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의 매입 단가는 약 \$80,000 내외이며, 스트래티지의 경우 \$75,000 선
 - 그러나 스트래티지의 매수 지속, ETF 자금 순유입 전환 및 확대 등으로 관련 우려 해소

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심리지수 변화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비트코인 보유 주체별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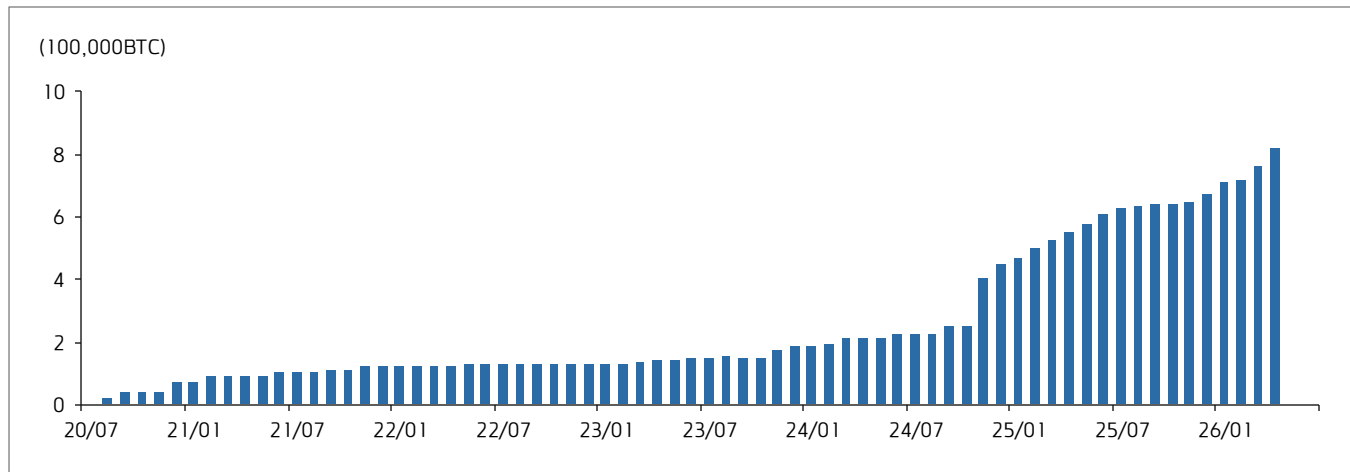
자료: Bitcoin treasuries.net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02.

비트코인 상승 요인 점검: ① DAT 기업의 비트코인 매입 지속

- ▶ MSTR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 중. 특히 4월 매수량은 56,235BTC로, 2026년 1분기 평균 매입량을 상회
- 연초부터 현재까지 MSTR이 매수한 물량은 총 144,551BTC에 달하며 4월 말 MSTR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818,334BTC, 이는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약 3.9%
- ▶ 현재 비트코인 일일 채굴량이 약 450BTC 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, MSTR의 매수 규모는 채굴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

스트래티지(MSTR) 비트코인 보유량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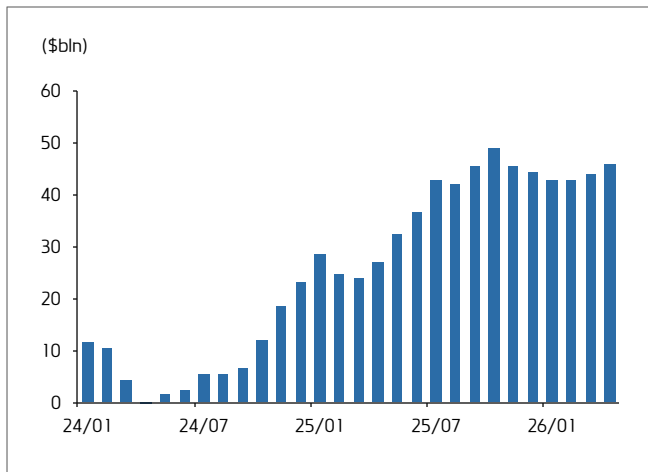
자료: Strategy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.

03.

비트코인 상승 요인 점검: ②비트코인 자산 편입 움직임 재확인

- ▶ 미국 주요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자산 편입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의 디지털자산 전략 총괄 담당자는 비트코인의 자산편입이 여전히 초기 단계임을 언급
- ▶ 모건스탠리는 기관의 비트코인 채택이 더딘 배경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,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개선 시 기관 채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 - 최근 모건스탠리는 고객 포트폴리오 내 2~4% 수준의 비트코인 편입을 권고

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순유입액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'25년 미국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관련 관심 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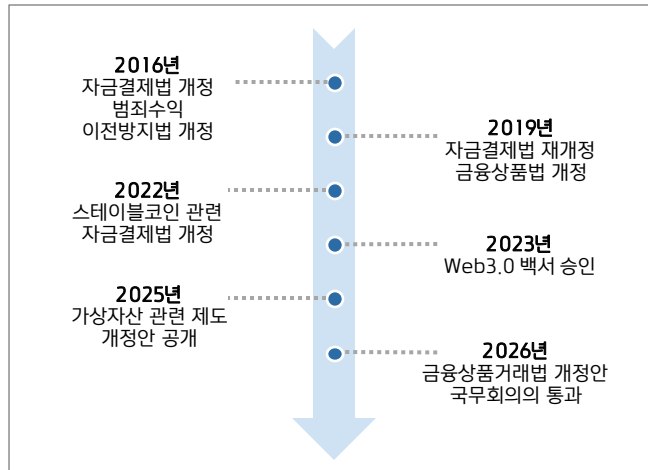
기관	가상자산 거래·수탁	사모 가상 자산 펀드	가상자산 ETP	가상자산 결제	토큰화
은행권	●	●	●	●	●
수탁은행	●		●		●
자산운용사	●	●	●		●
증권사	●		●		
결제사				●	●
시장운영사	●		●		●

자료: Bitwis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: Bitwise 보고서는 2025년 9월 30일 기준 작성

- ▶ 글로벌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자산 편입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, 지난해부터 일본은 암호자산(가상자산)에 대한 규제 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
 - 과거 일본 정부는 마운트곡스(2014) 등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자금결제법, 금융상품법을 개정하여 규제 체계 마련
- ▶ 비트코인 등은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관리 되었으나, 암호자산이 결제 수단보다 투자 자산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글로벌 규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규제 체계 재편 논의 본격화

일본의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



자료: 한국금융연구원, 언론사 정리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일본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

분류	스테이블코인	스테이블코인 및 증권형 토큰 외 토큰	증권형 토큰
정의	디지털머니형 스테이블코인*	암호자산	전자기록이전권리
근거법	은행법, 자금결제법, 신탁법	자금결제법	금융상품거래법
발행인	은행, 자금이동업자, 신탁회사	발행자가 직접 암호자산을 배포하는 경우 "암호자산교환업자"로 규제될 수 있음	발행자가 자체적으로 토큰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"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자" 규제
중개인	발행인 및 자금결제수단 거래업자	암호자산교환업자	제 1종 금융상품거래업자

자료: 한국금융연구원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* 디지털머니형 스테이블코인: 법정통화 가치와 연동된 가격으로 발행되고 액면가 상환을 약속한 스테이블코인

- ▶ 일본 정부는 2023년 4월 Web3.0 백서를 승인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공식화
백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현재 공개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내용과 유사
 -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, DAO 법인화 인정 검토, 암호자산 과세체계를 현행 잡소득(최고세율 55%)에서 신고분리과세(20%)로 전환하는 제언 등이 담겨 있음
- ▶ 2025년 일본은 암호자산(가상자산) 규율 근거를 자금결제법 중심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중심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. 2026년 4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, 2027년 중 법안 시행 예정

일본 정부가 승인한 Web3.0 백서의 주요 내용(2023년 4월)

구분	내용
목표	- 암호자산 산업확장에 대해 NFT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(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:DAO)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 제안을 공식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함
제언	<p>DAO의 일본 법상 법적 위치 설정, 구성원 법적 권리의무 내용, 과세 관계 등을 정리하고 DAO의 법인화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 검토 필요</p> <p>- 일본의 고도카이사(유한책임회사와 유사)를 기반으로 DAO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, 회사법 상 고도카이사 규제 및 금융상품거래법에 관련 규제를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</p>
	<p>보유 중인 암호자산, 암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 등 세금 규제에 대한 추가 변경 필요</p> <p>- 암호자산을 엔화나 달러 등의 법정통화와 교환한 경우와 암호자산과 교환한 경우에 대한 과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제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익에 대해 20%의 세율에 의한 신고분리과세 대상으로 할 것 • 암호자산 관련 손실 소득금액으로부터의 이월공제(다음 해 이후 3년간)를 인정할 것 •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 • 암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교환한 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산을 법정통화로 교환한 시점에서 일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, 한국 인터넷진흥원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.

- ▶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금융상품거래법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
 - 향후 일본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취급·중개나, 일본 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리는 구조
- ▶ 일본 금융청은 암호자산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차등 적용
 - 유형 1(자금조달·사업활동형): 발행자가 특정 가능한 암호자산. 발행자에게 정보공시 및 제공 의무 부과
 - 유형 2(비자금조달·비사업활동형): 비트코인, 이더리움 등. 발행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정보 설명의무 부과

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관련 내용 중 암호화 자산의 유형별 정의

구분	정의
자금조달·사업활동형의 유형 1 암호자산 (중앙집권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되고 그 조달자금이 프로젝트, 이벤트, 커뮤니티활동 등에 이용되는 암호자산(예, 일부 유틸리티, 토큰)으로 규정 - 유형 1 암호자산은 자본이득에 의한 금전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외에 암호자산의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에 의해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 - 암호자산의 신뢰성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, 관계자 정보, 조달자금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정보, 위험 관련 정보 등을 공시 및 제공하여야 함
비자금조달·비사업활동형의 유형 2 암호자산 (비중앙집권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형 2는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것(예, 비트코인, 이더리움 등)으로 비자금조달·사업활동형 암호자산. 유형 1의 암호자산과 달리 발행자를 특정할 수 없어 발행자에 대한 정보공시 및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- 대신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암호자산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, 가격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투자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- 암호화 자산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NFT(Non Fungible Token)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투자대상으로서 규제의 대상으로 상정되고 있지는 않음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.

- ▶ 한편 암호자산 관련 과세제도도 개편. 암호자산 투자 수익은 종합과세(55%) 적용 대상이었으나 일부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주식과 유사하게 분리과세(20.315%) 적용 추진
- ▶ 근거법 변경은 일본 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투자 자산으로 편입되고, 추후 비트코인·이더리움 등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 상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 준수가 동반된다는 것을 시사
 - 이에 기존의 일본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

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에 따른 암호자산에 대한 주요 규제 정리

구분	내용
정보 제공 규제(공시제도의 고도화)	정보의 비대칭성은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바, 암호자산에 관해서도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일반 이용자와 암호자산의 기술 등에 익숙한 전문가, 중앙집권적 관리자 등과의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 도입
업 규제 강화	암호자산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하고, 기존 자금결제법상의 암호자산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규정을 금융상품거래법 내에 새롭게 규제를 마련 - 진입 규제 및 재무적 건전성 강화, 업무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규제 강화,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위 규제 강화,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 투명성 규제 유지 및 강화
불공정거래 규제	암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에 있어 내부자거래 규제를 도입 - 일본의 암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에서는 시세조종이나 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준용하였으나, 내부자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부재.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처벌 외에도 과징금 제도를 신설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